

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 별표 1 "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(제 7조 제 1항 관련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" 별표 1 "

국내여비지급기준표 (7조 제 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야당)	식탁료 (1야당)
의장· 부의장	1등급	2 정액	정액	정액	감지 5,000 울지 4,000	17,000 15,000	11,000 9,500	800
의원	1등급	2 정액	정액	정액	감지 5,000 울지 4,000	17,000 15,000	11,000 9,500	800

- 비고 : 1. "감지"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, "울지"는 감지외의 지역으로 한다.
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특실로 하되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4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국내여비 지급기준 신규조문 대조표

(단위 : 원)

구분	비행 (1일당)	차량 (1일당)	항공 (1일당)	자등차임	연 지 고 통 비 (1일당)		숙 박 비 (10일당)		식 비 (10일당)		식 탁 로 (10일당)	
					연행	개정	연행	개정	연행	개정	연행	개정
국내여비	1일	2일	정	정	특 지 4,500	패 지 4,500	특 지 16,000	패 지 15,000	특 지 10,500	패 지 10,000	800	800
					갈 지 4,500	갈 지 5,000	갈 지 15,000	갈 지 17,000	갈 지 10,000	갈 지 11,000		
					을 지 4,000	을 지 4,000	을 지 13,500	을 지 15,000	을 지 9,000	을 지 9,500		

(비고)

현행	개정
<p>1. 특지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과천시, 경주시, 제주시</p> <p>갈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의정부시, 안산시, 구리시, 안주시, 강릉시, 속초시, 홍주시, 이리시, 근산시, 옥포시, 여수시, 나주시, 구미시, 포항시, 마산시, 울산시, 진주시, 서귀포시</p> <p>을지는 기타지역</p> <p>2. 자등차은임 및 항공차은임 정액은 그 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한하되 합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인요금을 지급한다.</p> <p>3. 철도은임 구분표준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단해 철도은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든 철도은임을 지급한다.</p>	<p>1. 패 지</p> <p>갈지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</p> <p>을지는 갈지의외의 지역</p> <p>2. 작등과 같음</p> <p>3. 철도은임은 새마을호 특실로 하되 당행 철도은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든 철도은임을 지급한다.</p> <p>4. 수로 여행시 패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은임을 지급하되 은임의 정액은 해수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</p>